
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813호
- 나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30일
- 라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5일

2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양성평등 실현, 서울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, 복지 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출자·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
- 관련법령

- (공통)법령 : 민법(제32조)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(개별)법령 : 양성평등기본법

- 조 례 :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

②항 “시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”

○ 출연금액 : 5,559,651천원

나. 주요 사업

- 여성·가족·보육·저출산, 아동·청소년 관련 정책연구·개발
-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,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
-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 사업
- 국내·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
-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·가족 양립 문화 조성 사업
-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시 여성·가족·보육, 아동정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·개발 및 시민체감형 정책실행을 위한 역량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,
- 서울여성의 경제력 강화, 체감하는 성주류화, 여성안전과 사회통합, 서울 가족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6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동의안 제출 개요

- 본 동의안은 ‘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(이하 “여성재단” 이라 함)’ 에 대하여 출연하고자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- 구체적으로, 개정(' 14. 5. 28)된 「지방재정법」은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” 고 규정하는데 따른 것으로,
-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, 무분별한 출자·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¹⁾.
- 또한, 이는 시의회 예산심의와 별개로, 예산심의를 앞서 출자·출연

1) 신구대비표

지방재정법 [법률 제11900호, 2013.7.16., 일부개정]	지방재정법 [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, 일부개정]
<p>제18조(출자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(出資)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 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

여부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한 것이며, 이의 시행이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됨에 따라, 금번 2016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것임.

나. 여성재단 운영 개요

- 시장이 출연하려는 서울시 여성재단은,
 - 「민법」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²⁾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,
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출연기관으로,
 - 2002년 서울시 출연을 받아 설립되어,
 -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하기 위하여,
 - 다음의 각호에 대한 사업을 행함(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(재단의 사업)).
 1. 여성·가족·보육·저출산, 아동·청소년관련 정책 연구·개발
 2.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
 3.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
 4.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
 5. 국내·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

2) 「민법」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6.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
7.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
8.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
9.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
10.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여성·가족·보육·저출산, 아동·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11.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다. 여성재단의 출연 현황 및 타당성 검토

- 여성재단은 서울시에서 한해 평균 51억원('11년~15년, 5년 평균)을 출연하고 있는데,
 - 출연 근거는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³⁾와 「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기금 및 출연금)⁴⁾ 및 제13조(운영재원 등)⁵⁾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바,
 -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3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) 「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기금 및 출연금) ② 시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5) 「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운영재원 등)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기금운영과 관련한 이자수익금, 수탁사업수입금, 지정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〈여성재단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황〉

(단위 : 백만원, %)

연 도	예 산 액 (백만원)		비 율 (%)	
	총사업비	출연금	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	전년도 대비 출연금 증가율
2011	9,046	5,212	58%	-33%
2012	9,038	5,790	64%	11%
2013	8,648	5,029	58%	-13.2%
2014	9,736	4,690	48%	-6.7%
2015	11,889	4,890	41%	4%

- 따라서, 서울시가 여성재단에 대하여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, 동 재단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가와 관련된 정책적 판단이라 할 것이며, 재단 운영이 필요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 할 것임.

- 이런 점에서 보면, 여성재단은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생활속 성평등 전문기관으로,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연구와 관련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, 이는 또 서울시의 여성 및 가족, 보육 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씽크탱크(Think tank) 역할로서의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바, 재단의 존립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, 여성재단 출연을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- 다만, 여성재단의 출연과 관련하여, 금번 2016회계연도 출연금으로 55억 5,965만원이 편성 되었는데, 이처럼 여성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매년 지속

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, 여성재단의 건전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자체 수익사업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